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 농가부채 문제 해결, 일선 농축협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 홍천 내촌농협의 모범적인 지원 사례를 본받아야 …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

(사)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한농연회관 5층 강당에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및 이상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농연 중앙 및 도·시·군연합회의 회원 20여명은 현행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각종 개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및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폭넓게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 중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실적이 제일 저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직원 이해가 부족하고, △까다로운 선정 및 심사기준으로 인해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정책자금 상환 혹은 2004년 상호금융대체자금 관련 신청율은 거의 100%대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농업

경영회생자금은 총 2천억원의 예산 중 186억원 신청에 152억원만 지원이 결정되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 상시적인 농가 경영회생 대책으로 도입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정부와 농협의 홍보 부족 및 일선 상담창구 직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같은 한농연 회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농림부·농협중앙회 담당자들 또한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일선 한농연 회원들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연합회 회원들로부터 경영현황 평가표에 대한 불만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현재 회원조합의 일선 창구에 비치된 경영현황 평가표에 의하면 105점 만점 중에 70점을 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 조건상 일선 농민들 중에서 70점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한농연 회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아울러 한농연은 △지원 대상 자금과 지원 대상 농업인 자격이 제한되어 농업인들의 수혜 폭이



좁으며, △ 경영평가위원회가 시군지부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일선 농업인들의 심사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농가부채특별법상의 여타 자금은 회원조합에 농업인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반면, 농업 경영회생자금은 시군지부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참여하여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선 회원조합들의 상담 기피와 거부 문제가 제일 심각 회원조합 내 임직원들의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이 제도 개선의 관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선 회원조합들의 상담 기피 및 심할 경우 상담 거부 등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제일 컸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한농연 회원들은 일부 회원조합들이 고율 연체자금을 저리의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

●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실적(단위 : 천건, 억원)

대상자금	지원규모 (A)	신청금액 (B)	지원결정액	지원액 (C)	비율(%) (B/A)	비율(%) (C/A)
정책자금 상환	80,409	74,566	34,536	16,655	92.7	15.5
2004년 상호금융 대체	68,600	68,830	33,596	20,293	100.3	29.6
연대보증 자금상환	4,526	2,172	1,997	1,182	48.0	26.1
농업경영 회생자금	2,000	186	152	131	9.3	6.6
계	155,535	145,754	70,280	38,261	93.7	24.6

자료 : 이정일 의원 2004년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 2004. 10. 4

리 차이만큼의 수익 손실을 우려하여 상담 자체를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해당 조합에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 등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연체기록이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일선 농민들의 심사 신청조차 상담 창구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 농림부, 농협중앙회, 회원농축협의 정책 홍보 및 대농민 상담 강화

- 홍보 전단, 문답식 해설자료, 상담 및 지원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현장 농민과 일선 상담직원들의 이해를 제고
- 일선 상담직원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의견 수렴 작업을 적극 실시하여,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 연체 및 신용불량 농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해야 함. 이를 통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600% 이상일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특용·약용작물 및 시설원예농가는 적은 면적에 고액의 투융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행 적용기준 면적을 1/2로 축소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아울러 작목 혹은 축종별 심사기준 소득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함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유지·확대

○ 심사 및 지원 과정에 농민단체의 참여를 확대

- '경영평가위원회'에 한농연 등 농민단체 회원 및 관계자들의 참여 공간이 보장되어 있으나 정책 홍보 부족 및 일선 농민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림부·농축협·농민단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대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신보를 포함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체 경제정책의 기조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채 대책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천군 내촌농협의 모범사례…농민조합원이 살아야 조합 임직원도 산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홍천군 내촌농협의 모범사례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관내 농산물 및 임산물 판매사업 등에 모범을 보였던 내촌농협은, 임직원들이 조합원들의 부채 해결을 위해 일과 이후에도 집중적인 상담활동을 벌인 결



과 36명 조합원들에게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데 성공했다.

내촌농협의 임직원들은 정부 농가부채대책에 대해 “농·축협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 채권이 없고 카드빚이 없는 농민은 연체가 아무리 많아도 부채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합원 수나 출자금 규모가 매우 작아 부채 조합원들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조합파산으로 인한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독려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조합장 이하 전 임직원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에 일과 시간 이후에도 전적으로 매달리기로 결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들이 상담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하여 내촌농협은 총 36명의 조합원, 29억원의 지원 실적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는 9월말 전국 전체 지원 실적의 22.4%, 강원도 관내 실적의 70%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더욱 의의가 큰 것이다. 회원조합 내 임직원들의

발상 전환과 적극적인 조합원 지원 활동을 통해, 극심한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경감대책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개선의 성과를 거둬

한농연 시군·읍면동 회장 및 일선 회원들의 ‘경영평가위원회’ 참여가 절실

위에서 언급한 한농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과 이상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장은, 현행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일선 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회원농축협 내 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민단체 대표들의 참여 폭 확대, 준전업농 기준 및 농업용 부채 규모의 하향 조정, 연체 농업인 구제를 위해 지원 대상 자금의 종류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보완 방안 (농림부, 10월 1일 발표)

1.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보완 사항

- 농업인 신청 마감시한을 2004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
- 상호금융대체자금(총 7조원) 지원 혜택 확대
 - 지원대상금액('03말 대출잔액 - '99말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 한도를 100%까지로 확대
 - 지원대상금액 1천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
 - 과거 부채대책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은 '00~'03년 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의 2003년말 잔액의 70%까지 지원

2.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개선

(2004년 책정 예산 2,000억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 지원 대상 농업인 자격 완화
 - 전업농 규모 1/2 이상인 농업인으로 완화
 - 농업용 총 부채가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지원 대상 자금 범위 확대
 -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 1. 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일선조합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 · 지원을 도모

이같은 한농연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농림부는 한농연이 주최한 간담회 결과들 종합하여, 농가부채 경감대책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10월 1일 발표하였다(아래 상자 안의 내용을 참조).

특히 이번 농가부채 경감대책 개선을 통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가

일선 회원조합 내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농연 일선 시군 · 읍면동회장을 포함한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 홍보 및 수혜 농민 확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농축협 임직원들의 보다 성의있는 대응을 통해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더욱 내실있는 농가구제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